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평가체계 강화 등〉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19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평가체계 강화 ..... | 2 |
| 2. 국회 보고체계의 신설 .....            | 4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형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년 10월 27일

3.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8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평가체계 강화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조치 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여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략)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 <u>&lt;신설&gt;</u>                | <u>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u>     |
| <u>⑤ (생략)</u>                    | <u>⑦ (현행 제5항과 같음)</u>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매년 집행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인력 및 예산, 사건·사고 예방, 국제협력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외공관별 영사조력 업무 및 안전관리 정책이 구체화되는 구조임.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외공관의 실제 조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해외 정세 변화와 사건 유형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집행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방향적 계획·집행 구조에 피드백(Feedback)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지속적 개선과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특히 최근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의 증가 및 위기상황 대응 요구가 확대되는 여건에서, 외교부 본부가 각 재외공관의 활동성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국회 보고체계의 신설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 보고 의  
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2조의2(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br/>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br/>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br/>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기본계획</p> <p>2. 집행계획</p> <p>3.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석·평가<br/>결과</p> <p>4.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외국민<br/>사건·사고에 관한 전년도 통<br/>계</p> |

현행법상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회의 직접적인 보고 절차나 검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추진 방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감금 사건, 해외 재난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의 재외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가 수립한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재외공관의 조치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감시·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이러한 개선은 국회가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전반적 추진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교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제3호(조치 실적의 분석·평가 결과)와 제4호(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의 경우, 내부 업무자료로서 대외 공개가 어려운 성격의 자료라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63 |